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2748 판결 [공사대금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27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가단50195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도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호

변론 종결 2024. 10. 30.

판결 선고 2024. 12.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가단50195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4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22. 7.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2. 7. 13.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22. 12. 21.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 2022. 12. 23.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2022. 12. 21.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2. 12. 23. 제기되었으므로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지업, 도장, 도배 및 내장공사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2021. 7. 27. 피고[H(피고의 다른 사업자명)]의 대리인으로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G'라고 한다)의 J센터 리노베이션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가 2021. 7.경 G로부터 서울 강남구 D 내지 K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체 리모델링 공사(위 J센터 리노베이션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21. 8. 12.부터 2021. 10. 31.까지, 공사대금 4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2021. 9. 13.부터 2021. 11. 7.까지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작업사항, 현장조치사항, 작업인원, 감독자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고 작업사진을 첨부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와 G 직원에게 보고하였다.

마. 피고가 2021. 11. 8. G에게 'G의 요청으로 인한 공사 중단,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한 비용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무렵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바. G가 2021. 8. 13.부터 2021. 9. 1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2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1. 9. 13.부터 2021. 11. 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75,02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주식회사 I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억 원에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이외에 피고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자료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21.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철수를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시켰다. 원고가 2021. 9. 13.부터 2021. 11. 7.까지 진행한 기성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164,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로부터 75,026,000원의 공사대금만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9,6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9,6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더라도 기성대금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얻은 이익의 존재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존부

가. 관련 법리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 112145 판결 참조).

나. 하도급관계의 존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안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현장소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다(하수급인이 원도급인에게 하도급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현장소장처럼 행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도급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하도급관계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주식회사 I의 각 사실조회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을 토대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작업 인원을 확인하며 작업을 지시, 감독하였고 공사·감독일지도 직접 작성하였다. 반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도록 한 직원이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 진행 내역을 보고받는 이외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시를 한 내역도 없다.

(2) M(철거), (주)N, (주)O, P(주), Q, R, S철물점, T 등이 2021. 9. 18.경부터 2021. 11. 9.경까지 사이에 각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견적서, 공사대금 청구서를 보냈으며, 원고가 직접 이들에게 일부 자재대금 등을 송금하고 인건비도 일부 지급하였다. 통상적으로 현장소장이 직접 그 명의로 자재를 주문하거나 인부를 고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정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하도급관계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소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노무인력이나 잡자재 등을 일부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2024. 5. 20.자 준비서면 3, 4쪽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노무비, 자재비, 경비를 산출하여 작성한 견적서에 기초한 공사대금이 정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그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계약관계는 하도급과 유사한 계약관계로 보인다).

(3) 원고가 공사 중단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1. 12. 6. 피고에게 기성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1. 12. 17. G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G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대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원고가 기성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조속히 지급받아 대금결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공사 중단일로부터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위와 같이 일관되게 하도급관계를 주장하고, 견적서에 기초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할 뿐, 원고에게 지급할 정당한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현장소장의 역할 수행을 한 원고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11. 8.경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공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G가 용역업체에 맡겨 기성 공사대금을 산출한 내역이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견적서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스스로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관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계산하여 원고 청구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4) 피고의 대표자인 U가 G 직원(L 등)에 대해 원고를 '소장님'으로 지칭하고, L가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공사·감독일지의 작성자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자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도급인에게 하도급관계를 알리고 싶지 않아 G측에는 원고를 '소장님'으로 칭하였을 수 있고, L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전반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소장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관계를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

(5) U가 2021. 11. 6. 원고에게 'G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비딩에 참여시켰고 일을 줬고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일을 줬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6) 원고가 H의 부대표로 표시된 명함, 피고 명의의 법인카드, 회사 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신청을 돕는 과정에서 형식상 만든 명함일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원고가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미지급 공사대금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의 기성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가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의 액수는 실제 소요된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시행한 공사대금이 164,67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주식회사 I의 각 사실조회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G가 이 사건 공사의 기성현황, 공사비 검증을 위해 (주)V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2021.

11.말경 위 업체로부터 'G J센터 리노베이션 공사 공사비 검토 용역 보고서(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라고 한다)'를 보고받은 사실, ② G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7547 사건에서 피고가 조정 요청하여, 2023. 10. 10. 조정이 성립되어 소 취하되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통틀어 273,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④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원고가 작성한 공사·감독일지(시공사에서 제시한 사진,

공사일보, 작업일보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도 참조하여 작성된 사실,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인부를 투입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 149,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중 65,306,000원이 노무비인데, 공사·감독일지에 기재된 공사 투입 연인원이 261명으로,

공사집계표(갑 제13호증의2)상 연인원인 257명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도

노무비를 69,933,500원으로 산정한 사실, ⑥ 원고가 2023. 12. 6.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기성 견적서(3장)를 제출하였으며, 위 견적서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도 제시하고 있는 사실, ⑦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구, 조명기구 등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의 주문계약서(을 제8호증)는 계약일이 2021. 5. 3.이고,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도 위

주문계약서 기재 가구 내역이 기성고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⑧ 위 가구대금을 제외하면

피고가 직접 지출한 물품대금은 수천만 원 정도인 사실, ⑨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견적서에 기재된 간접비 비율과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간접비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원도급인인 G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정산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투입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계산할 이유가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원고가 매일 작성한 공사·감독일지도 참고하여 작성된 점, 피고가 일부 물품을 구매한 이외에 주로 원고가 직접 인력과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 인정한 기성고 공사대금이 273,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공사대금 164,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89,644,000원(= 164,670,000원 - 기지급 대금 75,02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임으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재남

판사선의중

판사정덕수